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개정(안) 입안예고

농림부 자료제공

농림부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24조·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부고시)을 개정했다.


본고에서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1. 개정 이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추가 및 조정하고 원산지표시기준 등에 대한 일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 가.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대상품목 추가·조정
- 나. 농산물가공품의 경우 식품공전 정의 품목과 건강식품공전 정의 품목을 분류
- 다. 특수한 경우의 수입농산물판정기준 규정 신설
- 라. 농산물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마. 복합가공품의 원산지표시대상 원료 산정방법 개선
- 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입산” 표시 규정 보완
- 사.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세분화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 신 설 〉</p>	<p>제2-1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p>
<p>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p> <p>①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장된 가공품</p> <p>가. 위치: (생략)</p> <p>나. 글자크기</p> <p>(1)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18급)이상</p> <p>(2)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p> <p>①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장된 가공품</p> <p>가. 위치 (현행과 같음)</p> <p>나. 글자크기</p> <p>(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p> <p>(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이상</p> <p>(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이상. 다만, 8포인트(12급)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p>
<p>②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가공품의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사용된 가공품을 포함)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4회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4회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증감범위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00.11.20)</p> <p>2. (생략)</p>	<p>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 신 설 〉</p>	<p>⑥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p>

(별표 3) 수입농산물 원산지 판정 기준

구분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변경	<p>중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한다.</p> <p>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p> <p>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튕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p> <p>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수 없음</p> <p>EX4)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p> <p>※ 종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로서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p>
원산지 미변경	<p>·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산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p> <p>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2cm정도)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p> <p>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p> <p>EX3) 인삼(장뇌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p> <p>※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산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p> <p>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p> <p>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p> <p>※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p> <p>EX6)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p>
원산지 전환 (일정기간 경과)	<p>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p> <p>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 <p>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 <p>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